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 조정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8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장도매인 도입 요청에 대한 승인 의무 부여	3
2. 공시내용 확대 및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	17
3.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 조정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시장도매인 도입요청에 대한 승인 의무 부여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 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도매인 도입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 제17조¹⁾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호²⁾에서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조례)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제5항에서는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규정 변경 승인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시장도매인 도입요청에 대한 승인의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현행법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어 보임.

또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운영 중인 서울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낮은 농가 수취가격과 높은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 도매시장에 대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공영도매시장의 공공·공익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집주체(도매시장법인, 공판장)와 분산주체(중도매인)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양 주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대립하여³⁾ 거래를 하기 때문임.

시장도매인은 산지수집과 소비지판매를 모두 수행하여 공개경쟁 거래체제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여부에는 공영도매시장이 자유거래 방식으로 전환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의 중요한 판단을 필요로 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검토와 승인제가 필요함.

3) 도매시장법인은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인 위탁수수료를 수익으로 하여, 가격이 높을수록 이득임 반면, 중도매인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수록 이득이므로, 양 주체는 대립관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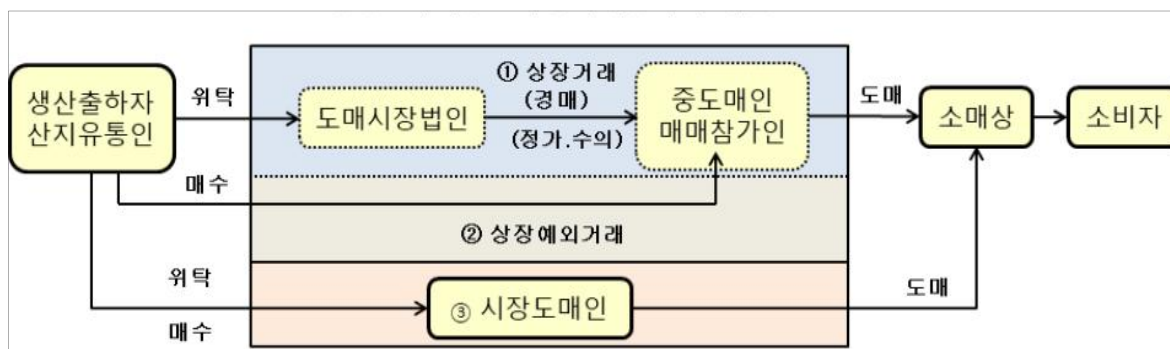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1) 시장도매인 제도 현황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임.⁴⁾ 수집·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법인(수집)·중도매인(분산)과 구분됨.

도매시장 거래구조는 ①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상장하여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방식(상장거래), ② 현행법 제31조제2항 단서⁵⁾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방식(상장예외거래) 및 ③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거래하는 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됨.

< 도매시장 거래구조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9. 19.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의 시장도매인 제도는 2000년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로, 당시 의결된 법률안⁶⁾에서는 주요골자에서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출하자의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천: 시장도매인 도입 >

- (시장도매인) '98년 농산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출하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00)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유통주체로서 과거 도매상과 유사
 - * 유통 여건상 시기상조이며 도입 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유통비용 절감 및 출하선택권 확대 의견에 따라 도입
 - ** 서울강서 도매시장 60개 법인, 전체 도매시장 거래량 중 6% 차지(물량 기준, '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9. 19.

다만, 2023년 기준, 전국 49개 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11개, 지방도매시장 35개) 중에서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이라 한다),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대구시한약재 도매시장의 4개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1개, 지방도매시장 3개)⁷⁾에만 시장도매인이 존재하며, 그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음.

6) 의안번호 15248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7) 중앙도매시장 1개(대구북부), 지방도매시장 3개(서울강서, 안동농수산물, 대구시한약재)

< 2023년 시장도매인 거래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톤)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부류	수	거래물량	거래금액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60	345,545	902,283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8	14,168	129,116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	1	743	11,117
대구한약재도매시장	약용	1	89	1,319
합계		70	360,545	1,043,835

주1: 대구한약재도매시장은 지정 법인인 (주)대구한약재도매시장 영업 종료('19.12.31.)후, 시장도매인 제도로 지정하여 운영('20.6.1.)중에 있음

주2: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는 시장도매인이 아닌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1. 17.

한편,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있는 강서시장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 간의 경매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2023년 기준, 거래량 상위 20개 품목 중 양파와 당근을 제외한 18품목에서 강서시장(시장도매인 도입)이 가락시장(시장도매인 미도입)보다 평균단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의 주요 품목 경매가격 비교(2023년 기준) >

(단위: 원/kg, %)

구분	전국 평균단가 (32개소)	서울가락(순위) (a)	서울강서(순위) (b)	비율(a/b)
사과	3,801	4,506(4위)	3,531(28위)	1.28
양파	1,076	1,102(7위)	1,120(5위)	0.98
감귤	2,631	2,752(6위)	2,235(31위)	1.23
오이	2,237	2,318(6위)	2,066(16위)	1.12
포도	5,938	6,169(4위)	5,697(24위)	1.08
풋고추	4,540	4,581(16위)	4,351(24위)	1.05
무	506	521(12위)	445(27위)	1.17
배추	731	714(18위)	536(26위)	1.33
호박	2,138	2,251(2위)	1,938(22위)	1.16
수박	1,890	2,180(1위)	1,590(31위)	1.37
감자	1,696	1,763(2위)	1,559(18위)	1.13
복숭아	4,453	4,675(5위)	4,319(17위)	1.08
고구마	1,995	2,083(3위)	1,882(14위)	1.11
배	2,697	2,724(18위)	2,706(21위)	1.01
참외	3,440	3,458(16위)	3,123(27위)	1.11
토마토	2,890	3,001(3위)	2,886(12위)	1.04
대파	1,842	1,821(18위)	1,762(23위)	1.03
양배추	719	784(4위)	631(20위)	1.24
얼갈이배추	1,454	1,605(3위)	1,038(27위)	1.55
당근	1,499	1,305(28위)	1,425(25위)	0.92

주1: 전국 평균단가는 32개 공영도매시장 전체 평균이고, 순위는 32개 공영도매시장 내 순위임

주2: 해당 도매시장의 반입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치임(전체 거래금액/전체 반입물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1. 23.

2) 검토의견

가. 시장도매인 도입요청 승인 의무에 관한 검토사항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 시장도매인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가령, 청과·수산부류 거래물량의 대부분⁸⁾을 차지하는 공영도매시장⁹⁾¹⁰⁾의 거래실적을 반입형태(상장/상장예외/시장도매인)별로 구분하면, 대부분이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공영도매시장 청과·수산부류 반입형태별 거래실적 >

(단위: 백만원, 톤, %)

구분	합계		청과 부류		수산 부류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상장	5,662,606 (87.0)	13,868,934 (86.3)	5,459,336 (87.2)	12,983,292 (87.6)	203,269 (82.8)	885,642 (70.6)
상장예외	482,145 (7.4)	1,158,349 (7.2)	454,692 (7.3)	928,976 (6.3)	27,453 (11.2)	229,373 (18.3)
시장도매인	360,457 (5.5)	1,042,517 (6.5)	345,545 (5.5)	902,284 (6.1)	14,911 (6.1)	140,233 (11.2)
합계	6,505,207 (100.0)	16,069,799 (100.0)	6,259,574 (100.0)	14,814,552 (100.0)	245,633 (100.0)	1,255,24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1. 17.

8) 2023년 기준, 청과부류 거래물량의 약 99.4%, 수산부류 거래물량의 약 82.2%가 공영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됨

9) 공공투자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도매시장,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안법」에 따른 분류(중앙/지방) 외에 투자주체에 따른 분류[공영/일반법정(민간투자에 의해 지자체 개설)/민영(민간인 개설)]로도 통계를 운영하고 있음

10) 청과부류의 경우, 일반법정도매시장은 목포시/여수시/경주시/김천시/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의 5개소가 있고, 민영도매시장은 상주시/영주시 민영농산물도매시장의 2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는 공영도매시장에 해당함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49개 도매시장 중에서 시장도매인이 존재하는 도매시장은 4개 도매시장에 불과하고, 전체 시장도매인 거래금액의 86.5%, 거래물량의 95.8%가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청과부류) 1개소에 의해 거래되고 있음.

시장도매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재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도매시장 외에도 시장도매인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행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원하더라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함.

현행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¹⁾ 이 경우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내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¹²⁾¹³⁾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그런데 업무규정에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장관, 시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 도매시장의 경우 사실상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군·구가 개설자인 경우 시·도지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

구분	현행법	⇒	개정안
중앙 도매시장	- 시장도매인 도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	⇒	- 시장도매인 도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
지방 도매시장	- 시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 도입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	- 시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 도입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

주: 개정안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군·구’인 경우를 포함하는데, ‘군·구’는 개설권한이 없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6.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거래 방식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과 타 유통종사자인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비교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시장도매인의 수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모두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적정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되, ② 추가적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한하여, 해당 도매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¹⁴⁾¹⁵⁾

그런데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함.

이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지정과 달리 협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지정에 대하여 업무규정 승인이라는 수단 또한 사라지게 되므로 정책적 관리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도매시장에서 대부분의 매매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입찰을 통한 상장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집 기능은 도매시장법인이, 분산 기능은 중도매인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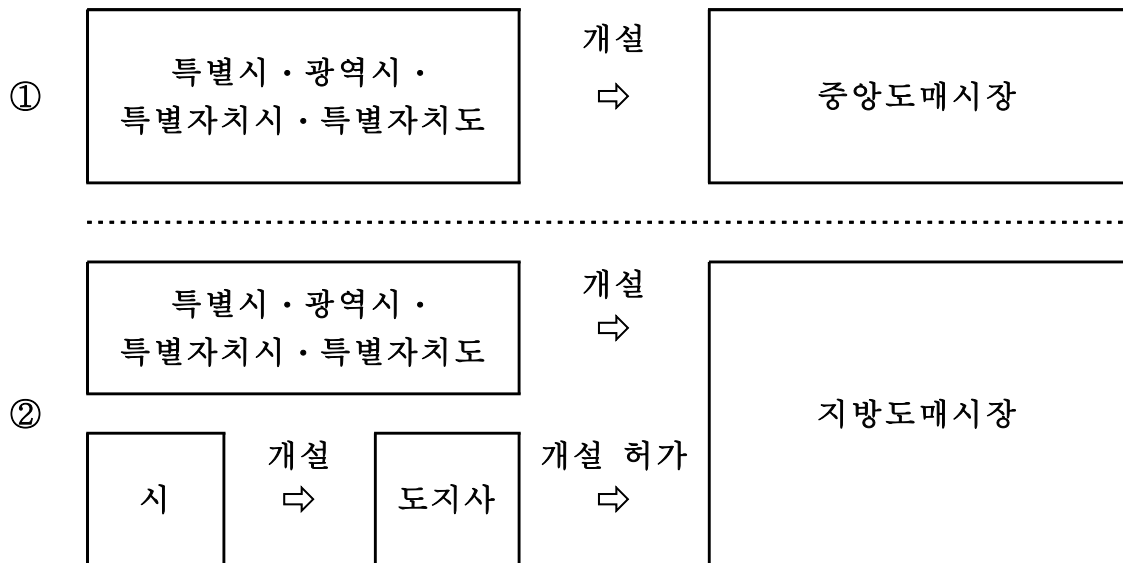
즉, 경매·입찰을 통한 상장거래 없이 스스로 수집과 분산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 제도의 확대는 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개정안 수용시 검토사항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시·군·구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도매인 도입 요청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도매시장의 개설권한을 ①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②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에게 부여하고 있음.¹⁶⁾

< 도매시장별 도매시장 개설자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6.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개정안은 도매시장 개설권한이 없는 ‘군·구’에 대하여도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규정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제2항 단서를 “다만, 시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부칙에서는 시장도매인 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 도입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참고로 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 도입 등 도매시장 내 제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2. 공시내용 확대 및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 부여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공시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거래일자별·품목별 거래가격 및 출하자 수취가격과 유통비용 등 가격정보를 공시하도록 공시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게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결정되어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및 합리적 가격 결정) ① ----- ----- <u>권익보호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u> <u>1.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u> <u>2.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거래가격 및 출하자 수취가격과 유통비용 등 가격정보</u> <u>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u> <u>4.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결정되어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시방법----- -----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공시내용 확대와 관련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위탁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별도의 유통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유통비용 대신 위탁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직접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

2)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공시내용 확대와 관련하여, 유통비용은 aT 등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서, 일선 도매시장법인이 조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와 관련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 특히 출하자 위탁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거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대치 및 견제구조 하에서 적정(시장)가격 발견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장매매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 장치로서, 이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낮음.

나. 검토의견

1)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공시제도 현황

현행법 제35조의2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①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②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③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④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음.¹⁷⁾

참고로, 현행법은 해당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있음.¹⁸⁾

다만, 관련하여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음.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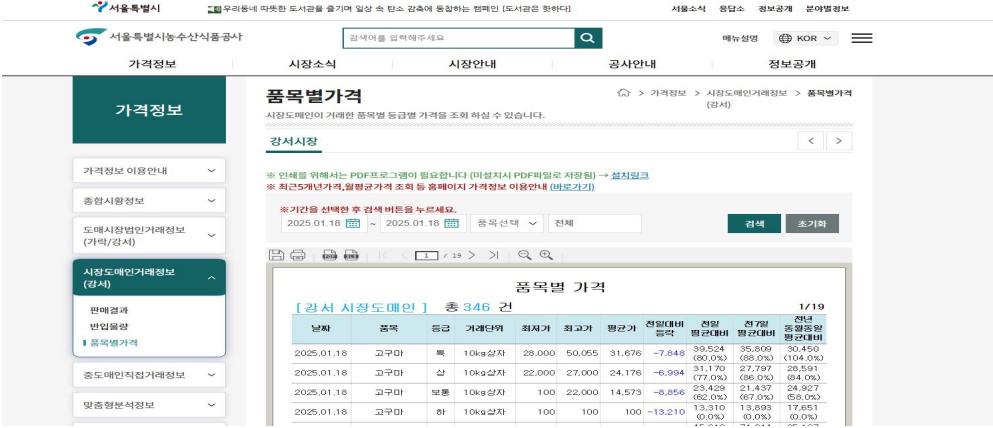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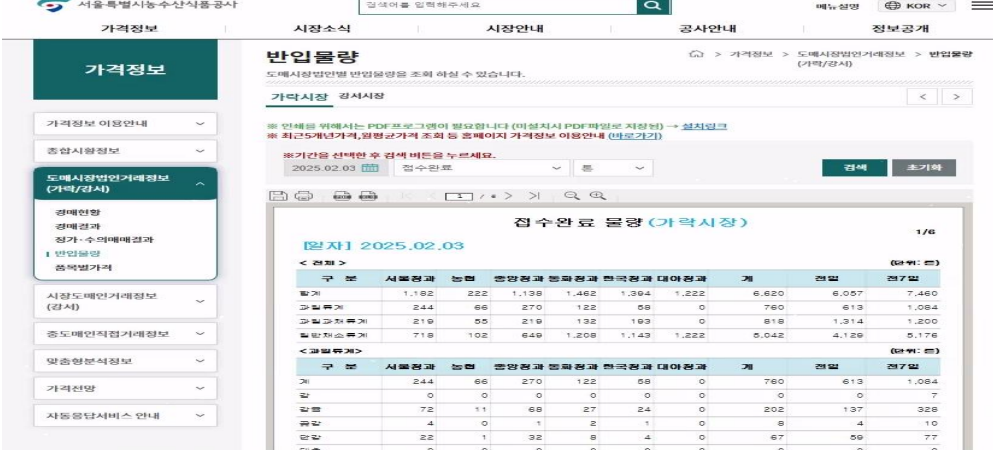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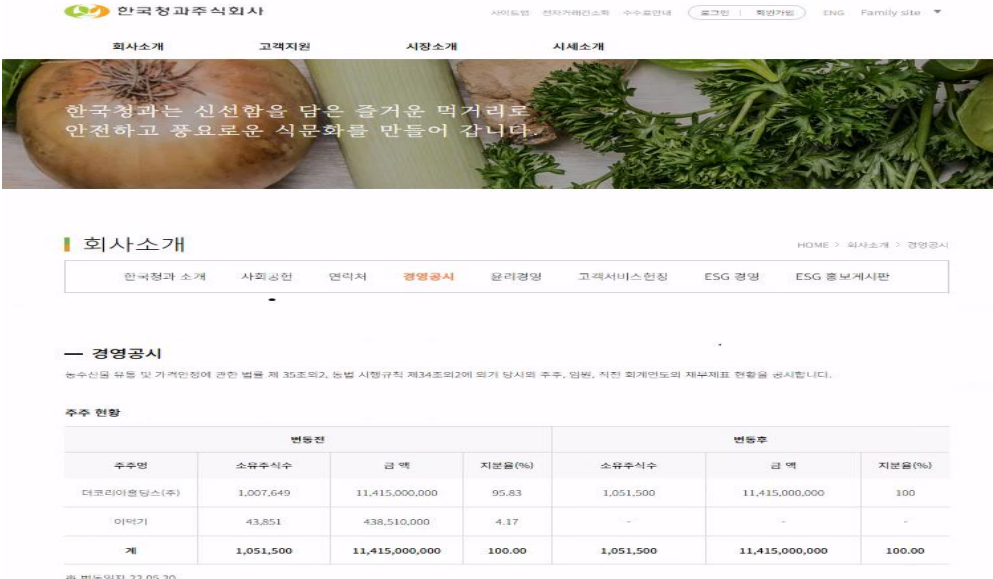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공시 사례 >

구 분	사 례
가격정보	
반입량	
주주 및 임원 현황	

구 분

사 례

재무제표

 동화청과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도 요약재무제표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요약 손익계산서(단위: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유동자산	52,957	매출액	39,201
비유동자산	3,948	매출원가	
자산총계	56,905	매출총이익	39,201
유동부채	11,335	판매관리비	31,559
비유동부채	3,180	영업이익	7,642
부채총계	14,515	영업외손익	1,046
자본금	7,500	법인세차감전이익	8,68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3)	법인세비용	2,032
이익잉여금	34,973	당기순이익	6,656
자본총계	42,390	세후기타포괄손이익	(289)
부채 및 자본총계	56,905	당기총포괄이익	6,367

주: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중 겸영사업을 하는 법인은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2. 4.

2) 검토의견

최근 기후위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그 가격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목격되고, 소비자가격에 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농산물 유통비용 특성 >

□ (정의) 농산물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차이로, 생산단계 이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이윤의 합계

<'22년 농산물 유통비용: 49.7% >

	소비자 지불액 100.0%			
평균	생산자 수취 50.3%	유통비용 49.7%		
단계별		출하 9.6	도매 13.5	소매 26.6
비용별		직접비 16.9	간접비 17.1	이윤 1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9. 19.

이에 개정안은 ①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공시제도의 목적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가하고,

②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거래일자별·품목별 거래물량, 출하자 수취가격 및 유통비용을 공시내용에 추가하며,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출하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임.

< 개정안 제35조의2에 따른 변화 >

구분		현행법	⇒	개정안
공시목적		-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	-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시내용	규정	- 시행규칙에서 규정	⇒	- 법률에서 규정
	내용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1.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	2.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거래가격 및 출하자 수취가격과 유통비용 등 가격정보
			=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4.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가격결정 의무	- 없음	⇒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 부여 * 생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결정되어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	
부령 위임사항	-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	-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 기존 부령 위임사항인 공시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자료: 개정안(2206783)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7.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기존에 부령으로 정하던 공시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공시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공시내용은 법률상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 공시 관련 유사 입법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30.

둘째, 개정안은 기존에 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공시 내용에 유통비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으로 이어지는 농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도매 거래가격-출하자 수취가격), 즉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 제35조의2제2항의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의 상당수가 경매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이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원리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주관하고 있지만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개정안의 취지가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가격결정 의무 대신 노력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에 대하여 벌칙 규정이나 제

재처분 등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언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 제35조의2제2항은 도매시장법인에게 합리적 가격 결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생산원가’와 ‘합리적 가격 결정’의 판단이 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 법률체계에서 ‘원가’와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은 아니지만, ① ‘원가’의 경우 간접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가능하고, 생산자마다 투입하는 생산요소나 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추산이 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원가 관련 유사 입법례 >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정하여야 하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용기·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6.

또한 ② ‘합리적’의 경우, ‘합리적’의 사전적 의미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인 점,¹⁹⁾ 유사 입법례에서 ‘합리적’ 가격에 대하여 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합리적 가격 결정’의 의미가 주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합리적 가격 관련 유사 입법례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서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6.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생산원가의 결정방식이나 합리적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2. 6. 확인

3.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 조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청과·수산·화훼 등 일부 부류의 경우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현행보다 낮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u>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u>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 -----.
③ 삭제	
<신 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지방도매법인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10을 더한 범위에서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 (참고) 현행 시행규칙 조문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1. 양곡부류: <u>거래금액의 1천분의 20</u> 2. 청과부류: <u>거래금액의 1천분의 50</u> 3. 수산부류: <u>거래금액의 1천분의 50</u> 4. 축산부류: <u>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 5. 화훼부류: <u>거래금액의 1천분의 50</u> 6. 약용작물부류: <u>거래금액의 1천분의 50</u>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u>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u>

가. 관련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따른 위탁수수료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도매시장법인별 경영·재무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른 지방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악화는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매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탁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시행규칙 규정에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중 위탁수수료만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으로, 해당 수수료 안에서도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상 필요한 각종 비용(시장사용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표준하역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이익이 실제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위탁수수료 인하시 대부분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어, 대금정산의 안전성 등 도매시장이 수행하는 공공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탁수수료 인하보다는 도매시장법인들의 출하자 대행기능 강화와 공유가치 확대방안 강구가 필요함.

나.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논의 경과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은 제21대 국회에서 김선교의원안(의안번호 2107897)으로 발의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임미애의원안(의안번호 2206758)으로 발의되었음.

<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 관련 「농안법」 개정안 이력 >

연번	대수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심사경과
1	제21대	2107897	김선교의원	'21. 2. 3.	'21. 2. 4.	'21. 4. 27.	임기만료폐기 ('24. 5. 29.)
2	제22대	2206758	임미애의원	'24. 12. 19.	'24. 12. 20.	-	미상정
3		2206783	윤준병의원	'24. 12. 20.	'24. 12. 23.	-	미상정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6.

개정안과 임미애의원안 및 제21대 국회의 김선교의원안을 비교하면,
①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모두 동일함.

②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의 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김선교의원안은 청과, 수산 및 화훼부류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지방도매시장에 한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1%p를 더한 범위에서 최고한도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임미애의원안은 개정안이나 김선교의원안과는 달리, 현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율을 그대로 규정하되,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²⁰⁾에 대하여만 최고한도를 7%에서 4%로 하향 조정함.

<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 관련 「농안법」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	윤준병의원안 (2206783)	임미애의원안 (2206758)	제21대 국회 김선교의원안 (2107897)
위탁수수료율 규정		부령	<u>법률</u>	<u>법률</u>	<u>법률</u>
위탁 수수료 율	양곡부류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과부류	7%	<u>5%</u>	7% ※ 단, 가락 시장은 4%	<u>5%</u>
	수산물부류	6%	<u>5%</u>	현행과 같음	<u>5%</u>
	축산부류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훼부류	7%	<u>5%</u>	현행과 같음	<u>5%</u>
	약용작물부류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방도매시장 특례 (1%p 내 인상 적용 가능)		없음	<u>있음</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료: 개정안(2206783), 김선교의원안(2107897) 및 임미애의원안(2206758)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6.

20) 참고로,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2개소인데, 청과부류는 오직 가락시장(5개 법인, 1개 공판장)에서만 취급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1)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현황

현행법 제42조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해당 업무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²¹⁾

<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수수료 등 징수제한 >

구분	징수 가능 금전	사용료/수수료 요율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저온창고 등) 사용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대금정산조직	정산수수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8.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탁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① 청과부류 7%, ② 수산부류 6%, ③ 축산부류 2%, ④ 약용작물부류 5% 등으로 규정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²²⁾

< 현행법령상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 >

구분	양곡부류	청과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최고한도	2%	7%	6%	2%	7%	5%

주: 다만, 축산부류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17.

각 도매시장법인의 2023년 기준 위탁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양곡부류²³⁾와 화훼부류를 제외한 네 가지 부류의 위탁수수료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가락시장이 1개 법인을 제외하고는 4%대의 위탁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가락시장 외 도매시장의 법인들은 대체로 5% 이상의 위탁수수료율을 보이고 있음.

22) 일정액을 위탁수수료로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최고한도로 규정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3) 유일한 양곡부류 도매시장인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2010년 서울양곡공판장(농협중앙회) 폐업 이후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이 존재하지 않음

< 2023년 기준 도매시장법인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율 현황 >

(단위: %) (상한: 7%)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서울	중앙	서울가락농수산물	서울청과(주)	4.50
			(주)중앙청과	4.54
			동화청과(주)	4.57
			한국청과(주)	4.68
			대아청과(주)	4~7
			농협가락(공)	4.53
	지방	서울강서농산물	서부청과(주)	6.78
			강서청과(주)	6.79
			강서농협(공)	6.76
부산	중앙	부산염곡농산물	부산청과(주)	6.00
			항도청과(주)	6.00
			농협부산(공)	5.88
	지방	부산반여농산물	동부청과(주)	6.00
			부산중앙청과(주)	6.00
			농협반여(공)	5.72
대구	중앙	대구북부농수산물	대구중앙청과(주)	6.00
			효성청과(주)	5.97
			대양청과(주)	6.00
			농협북대구(공)	5.36
			대구경북원협(공)	6.00
인천	중앙	인천남촌농산물	인천농산물(주)	4.0~7.0
			(주)대인농산	6.00
			덕풍청과(주)	6.0~7.0
			인천원협남촌(공)	3~7
		인천삼산농산물	(주)경인농산	6.16
			(주)부평농산	6.23
			인천원협삼산(공)	6.06
광주	중앙	광주각화농산물	광주청과(주)	6.00
			광주중앙청과(주)	5.94
			광주원협(공)	6.00
	지방	광주서부농수산물	(주)호남청과	6.86
			두레청과(주)	6.90
			농협광주(공)	6.63
대전	중앙	대전오정농수산물	대전청과(주)	5.90
			농협대전(공)	5.77
		대전노은농수산물	대전중앙청과(주)	6.00
			대전원협노은(공)	5.76
울산	중앙	울산농수산물	울산중앙청과시장(주)	6.98
			울산원협(공)	6.75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경기	지방	수원농수산물	수원청과물(주)	6.25
			경기청과(주)	6.11
			수원원협(공)	6.50
		안양농수산물	안양농산물(주)	7.00
			안양원협(공)	7.00
		안산농수산물	안산농산물(주)	6.50
			농협안산(공)	6.57
		구리농수산물	구리청과(주)	7.00
			(주)인터넷청과	6.40
			농협구리(공)	7.00
강원	지방	춘천농수산물	춘천중앙청과(주)	5.80
			춘천원협(공)	4.64
		원주농산물	합동청과(주)	5.60
			원주원협(공)	5.20
		강릉농산물	(주)강릉농산물	7.00
충북	지방	청주농수산물	청주청과시장(주)	6.50
			충북원협청주(공)	6.50
		충주농수산물	충주중앙청과(주)	6.57
			충북원협충주(공)	6.50
충남	지방	천안농수산물	천안청과(주)	6.50
			천안농협(공)	6.50
전북	지방	전주농수산물	전주청과물(주)	7.00
			전주원협(공)	6.40
		익산농수산물	(주)이리청과회사	6.48
			익산원협(공)	6.40
		정읍농산물	정일청과(주)	7.00
			정읍원협(공)	6.57
전남	지방	순천농산물	순천남도청과(주)	7.00
			남일청과(주)	6.65
			순천원협(공)	7.00
경북	지방	포항농산물	포항청과(주)	6.77
			대구경북농협포항(공)	6.55
			포항농협(공)	6.26
		안동농수산물	안동청과(합)	6.00
			안동농협(공)	6.00
		구미농산물	구미중앙청과(주)	7.00
			구미농협(공)	7.00
경남	지방	창원팔용농산물	(주)창원청과시장	6.75
			농협창원(공)	6.63
		창원내서농산물	마산청과시장(주)	6.82
			창원원협(공)	6.77
		진주농산물	진주중앙청과(주)	6.75
			진주원협(공)	6.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1. 23.

둘째,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이 1.50% ~ 3.4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도매시장에서는 3% ~ 6%의 위탁수수료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도매시장법인 수산부류 위탁수수료율 현황 >

(단위: %) (상한: 6%)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서울	중앙	서울가락농수산물	강동수산(주)	3.50
			서울건해산물(주)	3.18
			수협가락(공)	3.40
		서울노량진수산물	노량진수산(주)	4.30
부산	중앙	부산국제수산물	(주)부산감천항수산	2.58
			(주)삼성아이에프엠	1.50
			(주)부산수산물(공)	3.40
			부산수협감천(공)	3.40
대전	중앙	대전오정농수산물	한밭수산(주)	6.00
		대전노은농수산물	대전노은진영수산(주)	5.91
광주	지방	광주서부농수산물	수협광주(공)	4.43
울산	중앙	울산농수산물	울산중앙수산(주)	4.50
			울산건해산물(주)	2~6
			울산수협(공)	5.00
경기	지방	구리농수산물	강북수산(주)	4.75
			수협구리(공)	4.50
		수원농수산물	수원수산시장(주)	5.00
			남부수협수원(공)	4.46
		안양농수산물	안양평촌수산(주)	4.49
		안산농수산물	안산수산(주)	3.90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충북	지방	청주농수산물	청주수산물시장(주)	3.0~5.5
		충주농수산물	목행수산물(주)	6.00
충남	지방	천안농수산물	해랑수산물(주)	5~6
경북	지방	포항수산물	(주)신포항수산물	5.00
전북	지방	전주농수산물	전주수산물시장(주)	5.00
			수협전주(공)	4.50
		익산농수산물	이리수산물시장(주)	3~6

주: (공)은 공판장을 의미하는데, 공판장의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2조가 준용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1. 17.

셋째,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은 1.40% ~ 1.50%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기준 도매시장법인 축산부류 위탁수수료율 현황 >

(단위: %) (상한: 2%)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대구	지방	대구축산	신흥산업(주)	1.50
인천	지방	인천가좌축산물	삼성식품(주)	1.40
광주	지방	광주축산물	삼호축산(주)	1.50
경기	지방	안양민영축산물	(주)협신식품	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1. 17.

넷째, 약용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은 1개소에서 상한에 해당하는 5%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기준 도매시장법인 약용부류 위탁수수료율 현황 >

(단위: %) (상한: 5%)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경북	지방	영천약초	영천약초도매시장(주)	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1. 17.

2) 검토의견

현재 도매시장 거래제도에서 농산물 등의 수집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① 출하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위탁받아 ② 이를 상장하여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매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면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 2024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 도매시장법인 관련 질의 >

□ 2024년 10월 7일 - 농림축산식품부

- 문대림위원: 최근 5년 사이에 농산물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의 전체 사업소득이 50% 급등하였고, 가락시장 5대법인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음(pp. 12~13.)

□ 2024년 10월 24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

- ※ 해당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지회장(서울청과), 태평양개발(중앙청과)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음
- 조경태위원: 가락시장 5개 법인의 평균 이익률이 4년간 23.1%로, 주요 유통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높음(pp. 12~13.)
- 문대림위원: 높은 영업이익률 문제와 과도한 배당성향 지적(pp.52~54.)
- 이원택위원: 높은 배당률 지적 및 농민에 대한 환원구조 요청(pp. 55~56.)
- 송옥주위원: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농산물 가격 안정에의 효과성 질의(pp.58~59.)
- 이만희위원: 증인에 대하여 높은 영업이익률과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p. 67.)
- 어기구위원장: 도매시장 유통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 제도 필요성 지적(p. 68.)
- 임미애위원: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정취소 의무화 필요(pp 69~70.)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2.

이에 개정안은 ① 현재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율의 최고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② 청과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기존에 비하여 인하하되, ③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에서 1%p를 더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보고, 도매시장법인이 지나친 위탁수수료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제 생산자들의 수취가격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과 개정안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 비교 >

부류	현행법	→	개정안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양곡부류	2%	→	2%	-	2%~ 3%
청과부류	7%	→	5%	Δ2%p	5%~ 6%
수산부류	6%	→	5%	Δ1%p	5%~6%
축산부류	2%	→	2%	-	2%~ 3%
화훼부류	7%	→	5%	Δ2%p	5%~ 6%
약용작물부류	5%	→	5%	-	5%~ 6%

주: 개정안은 지방도매시장에 한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을 최대 1% 상승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자료: 개정안(2206783)을 바탕으로 재가공, 2025. 1. 26.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로서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의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이들 모두의 요율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농안법」상 도매시장 유통 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 >

연번	구분	개념	납부자	⇒	징수자	요율
1	도매시장 사용료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비용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 개설자	부령
2	시설 사용료	저온창고 등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	해당 시설 사용자	⇒	도매시장 개설자	
3	위탁 수수료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4	중개 수수료	농수산물 매매 중개에 따른 수수료	매매한 자	⇒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5	정산 수수료	거래대금 정산에 따른 수수료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대금정산조직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2.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위탁수수료의 요율만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이러한 구별을 둘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둘째, 위탁수수료를 최고한도 인하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단순히 평균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만 비교한다면, 2023년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청과부류 및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각각 청과부류 69개 법인(중앙 25개, 지방 44개)과 수산부류 3개 법인(중앙 3개)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의 영향 >

(단위: %, %p) (상한: 7% → 중앙 5%, 지방 6%)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23 기준)	필요 인하폭
서울	중앙	서울가락농수산물	서울청과(주)	4.50	-
			(주)중앙청과	4.54	-
			동화청과(주)	4.57	-
			한국청과(주)	4.68	-
			대아청과(주)	4~7	0~2
			농협가락(공)	4.53	-
	지방	서울강서농산물	서부청과(주)	6.78	0.78
			강서청과(주)	6.79	0.79
			강서농협(공)	6.76	0.76
부산	중앙	부산염곡농산물	부산청과(주)	6.00	1.00
			항도청과(주)	6.00	1.00
			농협부산(공)	5.88	0.88
	지방	부산반여농산물	동부청과(주)	6.00	-
			부산중앙청과(주)	6.00	-
			농협반여(공)	5.72	-
대구	중앙	대구북부농수산물	대구중앙청과(주)	6.00	1.00
			효성청과(주)	5.97	0.97
			대양청과(주)	6.00	1.00
			농협북대구(공)	5.36	0.36
			대구경북원협(공)	6.00	1.00
인천	중앙	인천남촌농산물	인천농산물(주)	4.0~7.0	0.0~2.0
			(주)대인농산	6.00	1.00
			덕풍청과(주)	6.0~7.0	1.0~2.0
			인천원협남촌(공)	3~7	0.0~2.0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23 기준)	필요 인 하 폭
		인천삼산농산물	(주)경인농산	6.16	1.16
			(주)부평농산	6.23	1.23
			인천원협삼산(공)	6.06	1.06
광주	중앙	광주각화농산물	광주청과(주)	6.00	1.00
			광주중앙청과(주)	5.94	0.94
			광주원협(공)	6.00	1.00
	지방	광주서부농수산물	(주)호남청과	6.86	0.86
			두레청과(주)	6.90	0.90
			농협광주(공)	6.63	0.63
대전	중앙	대전오정농수산물	대전청과(주)	5.90	0.90
			농협대전(공)	5.77	0.77
		대전노은농수산물	대전중앙청과(주)	6.00	1.00
			대전원협노은(공)	5.76	0.76
울산	중앙	울산농수산물	울산중앙청과시장(주)	6.98	1.98
			울산원협(공)	6.75	1.75
경기	지방	수원농수산물	수원청과물(주)	6.25	0.25
			경기청과(주)	6.11	0.11
			수원원협(공)	6.50	0.50
		안양농수산물	안양농산물(주)	7.00	1.00
			안양원협(공)	7.00	1.00
		안산농수산물	안산농산물(주)	6.50	0.50
			농협안산(공)	6.57	0.57
		구리농수산물	구리청과(주)	7.00	1.00
			(주)인터넷청과	6.40	0.40
			농협구리(공)	7.00	1.00
강원	지방	춘천농수산물	춘천중앙청과(주)	5.80	-
			춘천원협(공)	4.64	-
		원주농산물	합동청과(주)	5.60	-
			원주원협(공)	5.20	-
		강릉농산물	(주)강릉농산물	7.00	1.00
충북	지방	청주농수산물	청주청과시장(주)	6.50	0.50
			충북원협청주(공)	6.50	0.50
		충주농수산물	충주중원청과(주)	6.57	0.57
			충북원협충주(공)	6.50	0.50
충남	지방	천안농수산물	천안청과(주)	6.50	0.50
			천안농협(공)	6.50	0.50
전북	지방	전주농수산물	전주청과물(주)	7.00	1.00
			전주원협(공)	6.40	0.40
		익산농수산물	(주)이리청과회사	6.48	0.48
			익산원협(공)	6.40	0.40
		정읍농산물	정일청과(주)	7.00	1.00
			정읍원협(공)	6.57	0.57
전남	지방	순천농산물	순천남도청과(주)	7.00	1.00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23 기준)	필요 인하폭
경북	지방	포항농산물	남일청과(주)	6.65	0.65
			순천원협(공)	7.00	1.00
			포항청과(주)	6.77	0.77
			대구경북능금 농협포항(공)	6.55	0.55
			포항농협(공)	6.26	0.26
		안동농수산물	안동청과(합)	6.00	-
			안동농협(공)	6.00	-
		구미농산물	구미중앙청과(주)	7.00	1.00
			구미농협(공)	7.00	1.00
			(주)창원청과시장	6.75	0.75
경남	지방	창원팔용농산물	농협창원(공)	6.63	0.63
			마산청과시장(주)	6.82	0.82
		창원내서농산물	창원원협(공)	6.77	0.77
			진주중앙청과(주)	6.75	0.75
		진주농산물	진주원협(공)	6.45	0.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5. 1. 23.를 바탕으로 재가공(2025. 1. 30.)

< 개정안에 따른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에의 영향 >

(단위: %, %p) (상한: 6% → 중앙 5%, 지방 6%)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23 기준)	필요 인하폭
서울	중앙	서울가락농수산물	강동수산(주)	3.50	-
			서울건해산물(주)	3.18	-
			수협가락(공)	3.40	-
		서울노량진수산물	노량진수산(주)	4.30	-
부산	중앙	부산국제수산물	(주)부산감천항수산	2.58	-
			(주)삼성아이에프엠	1.50	-
			(주)부산수산물(공)	3.40	-
			부산수협감천(공)	3.40	-
대전	중앙	대전오정농수산물	한밭수산(주)	6.00	1.00
		대전노은농수산물	대전노은진영수산(주)	5.91	0.97
광주	지방	광주서부농수산물	수협광주(공)	4.43	-
울산	중앙	울산농수산물	울산중앙수산(주)	4.50	-
			울산건해산물(주)	2~6	0~1

시도	농안법상 구분	시장명	법인명	위탁수수료 (’23 기준)	필요 인하폭
			울산수협(공)	5.00	-
경기	지방	구리농수산물	강북수산(주)	4.75	-
			수협구리(공)	4.50	-
		수원농수산물	수원수산시장(주)	5.00	-
			남부수협수원(공)	4.46	-
		안양농수산물	안양평촌수산(주)	4.49	-
		안산농수산물	안산수산(주)	3.90	-
충북	지방	청주농수산물	청주수산시장(주)	3.0~5.5	-
		충주농수산물	목행수산(주)	6.00	-
충남	지방	천안농수산물	해랑수산(주)	5~6	-
경북	지방	포항수산물	(주)신포항수산	5.00	-
전북	지방	전주농수산물	전주수산시장(주)	5.00	-
			수협전주(공)	4.50	-
		익산농수산물	이리수산시장(주)	3~6	-

주: (공)은 공판장을 의미하는데, 공판장의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2조가 준용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1. 17.
 를 바탕으로 재구성(2025. 1. 30.)

특히 청과부류의 경우, 전국 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물량 중 34.8%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락시장은 이미 1개 도매시장법인²⁴⁾을 제외하고는 위탁수수료율이 평균 5% 미만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그 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24) 참고로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조건에 따라 무, 배추 등 8개 품목만을 다룰 수 있는 제한이 존재하는 법인으로, 품목별 위탁수수료율은 각각 배추 6.8%, 무 6.8%, 양배추 7.0%, 총각무 7.0%, 대파 4.6%, 쪽파 4.4%, 마늘 4.4%, 옥수수 4.7%임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1%p의 요율을 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44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 제도에서 출하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 출하자에게 대금을 즉시 결제하고 있고,²⁵⁾ 그 외에도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하역비 등을 출하자, 중도매인, 하역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시장 내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탁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전국적인 영향이 단순히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영업이익률 감소 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내 출하자나 타 유통종사자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매시장 내 영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42조제4항 후단에서는 ‘지방도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매시장의 경우 지방도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도매법인으로 약칭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